

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1.>

제 호
옥외집회(시위·행진)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
귀하가 년 월 일 시 분에 제 호로 제출한 옥외집회(시위·행진)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에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있으므로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보완할 것을 통고합니다. 1.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: 2. 보완기간: 수령 후 24시간 이내 (년 월 일 시 분까지)
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위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 집회(시위·행진)의 금지 통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경찰서장(시·도경찰청장) [인] 귀하

26026-26211일

190mm×268mm

(신문용지 54g/m²)

제 호
수령증
년 월 일 시 분 옥외집회(시위·행진)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를 수령하였습니다.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(인)